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 허용》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7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 허용(안 제68 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6. 10.

다.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 허용 (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④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후단 신설>	5의2. ----- ----- ----- 이 경우 해당

현행	개정안
6. (생략)	<u>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u> 6.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제2항).¹⁾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호 및 제2호),²⁾³⁾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구체적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⁴⁾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개발계획 \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1천세대 이하의 사업장은 57%이고, 1천세대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43%라고 함.

한편 현행법 제68조제4항⁶⁾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지역(천재지변 등 긴급 정비사업)⁷⁾,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역세권 등 정비구역)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정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재건축사업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정비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⁹⁾ 현행법 시행령 제57조제6호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이 10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됨.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처럼 정비구역 인근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한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구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9) 참고로 모든 정비구역에서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제2216781호)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임.

역 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시설로,¹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2024년 기준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서울 4.7m², 광명 5m², 의정부 5.6m² 등으로 전국 평균 12.6m²에 비하여 수도권 내 공원 조성 면적이 상당히 작은 편임을 알 수 있음.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표 1] 지역별 1인당 공원조성 면적(2024년 기준)

지역	전국 평균	서울	광명	의정부	안양	구리	부천
1인당 공원조성 면적(m ²)	12.6	4.7	5	5.6	5.6	5.7	6.2

※ 자료: 국토교통부

둘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의무 대신 비용 납부로 대체하는 규정 역시 필요하다면 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각 개별법에 대체비용 납부대상, 대체비용 산정방식 등을 따로 규정하는 것보다 관련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①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6. 10.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172호) 및 ②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 8. 13.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564호)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라면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 설치 의무를 비용으로 대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의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 외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타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비용 대체 납부 허용이 공원·녹지 조성·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10만㎡ 미만의 공공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정비구역에서는 공원·녹지 확보가 완화(면제)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비용을 대체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도 확보의무가 부과되어 사업추진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보비용 납부를 통해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부담 완화 및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건축구역의 적용범위가 천재지변·재난 등 긴급한 경우로 제한되는 만큼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76

참고

도시공원법상 개발규모별 도시공원 및 녹지확보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개발계획 \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u>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u>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